#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74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김예지·김선교·최형두

주호영 · 김도읍 · 김소희

최수진 • 박덕흠 • 김대식

김은혜 · 신성범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각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인사규정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음.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징계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비위행위에 대한 인지가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징계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징계 시효의 기산일을 사유를 인지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부터 제52조의11까지 신설).

#### 법률 제 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에 제52조의7부터 제52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7(징계 사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 3.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

제52조의8(재징계의결 등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 3. 징계양정이 과다(過多)한 경우
-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
- 제52조의9(징계의 종류 등) 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관 규모 및 업무내용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징계의 종류를 대통 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징계의 효력 및 절차,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의10(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 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8조제10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의11(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의 요구는 해당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금품 및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5년, 성비위의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 정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 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 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7부터 제52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2조의7(징계 사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
	여야 한다.
	<u>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u>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위
	행위를 한 경우
<u>&lt;신 설&gt;</u>	제52조의8(재징계의결 등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
	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
	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u>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하</u>

여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흠이 있는 경우
- 3. 징계양정이 과다(過多)한 경 우
-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장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정계위원회에 장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정계위원회는 다른 정계사건에 우선하여 장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의9(징계의 종류 등) 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 다. 다만, 기관 규모 및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징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징계의 효력 및 절차, 그 밖 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의10(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8조제10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 ② 정계위원회의 종류·구성· 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 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의11(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의 요구는 해당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過多)를 이유 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